

2025년 LH 특화형 주택[그루(Grew)하우스 서대문] 입주자 모집공고

예술인 지원주택 <그루(Grew)하우스 서대문>은 예술인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사회적 경제주체(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 및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주택입니다. 예술인들이 주택과 커뮤니티공간에서 활동하며 다채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기준일)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모집 공고일(2025.11.19)로 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1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미혼 청년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확인)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협업 및 커뮤니티 활동의 의지가 있는 예술인으로서 아래 예술인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예술인 기준 관련 증빙서류 및 포트폴리오 등 필수 제출)
 -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유효)한 예술인 (신진예술인 포함)
 -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예술인 : 최근 5년 내 예술활동 증빙 제출
 - ③ 예술 분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졸업 후 예술활동 계획이 있는 자
 - ④ 예술 분야 교육생 및 교육 이수 후 예술활동 계획이 있는 자
- (모집인원) 공급주택의 4배수를 모집합니다. (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해 입주 대상자에 더해 예비자를 입주 대상자의 3배수까지 모집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해당 주택의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예술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유의)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퇴거 조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의무)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신청 전 아래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 예술인 1인 거주공간입니다. (공간쉐어, 동거, 전대 등 불가)
 -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1

공급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주택개방	자격심사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
~25.11.19.	~25.11.19. ~12.9.	~25.12.4. ~12.6.	~25.12.10. 부터 약 2달	자격심사 게시일부터 약 2달 후	예비입주자 발표일부터 2주 이내	계약일부터 1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2 공급주택 : 그루하우스 서대문 (서대문구 증가로28길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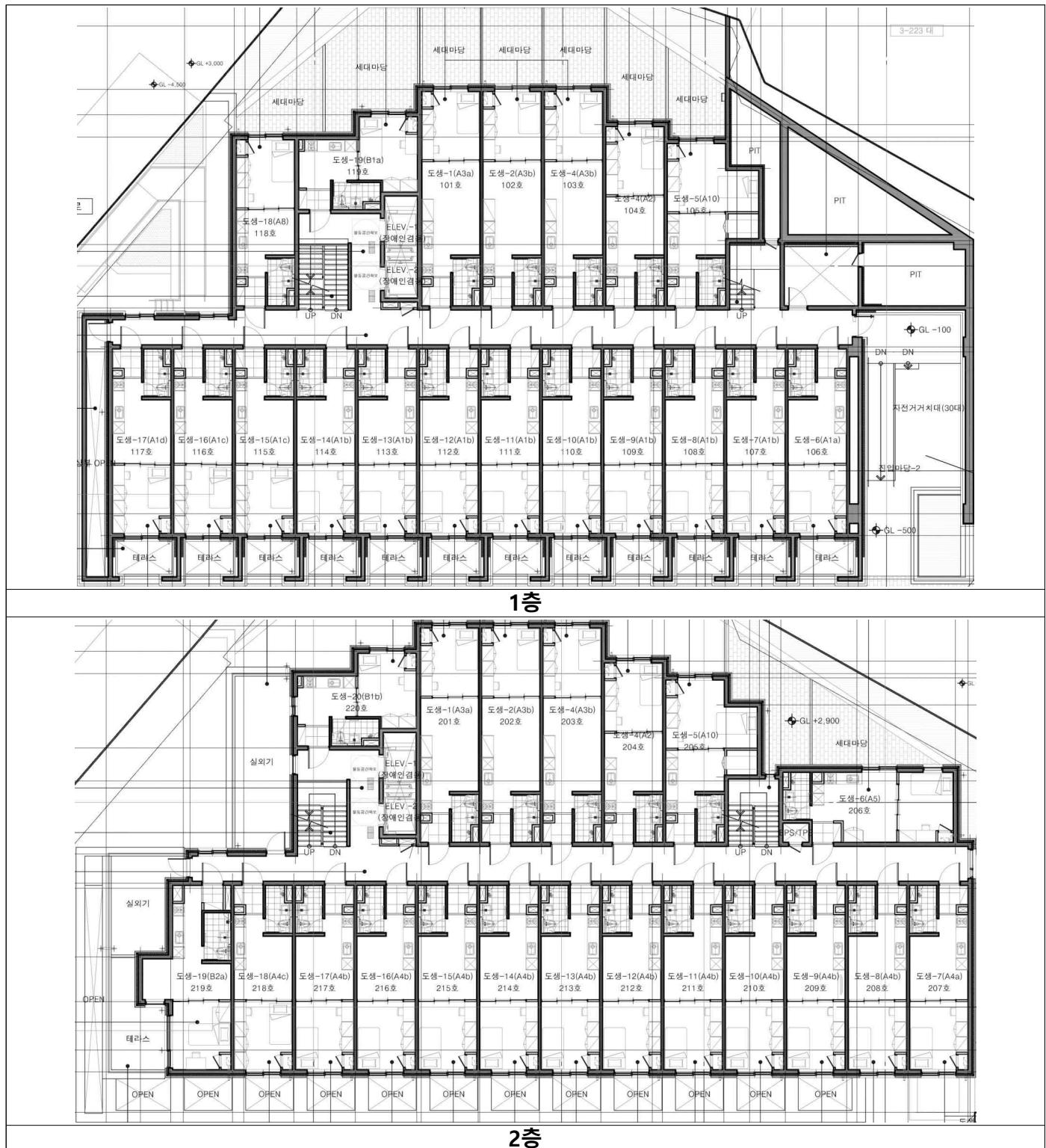
■ 주택개요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8길 40-6 (북가좌동 490)	
건물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생활주택 지상 5층, 지하 1층 - 96호 (모집호수 94호, 전용면적 22.84 ~ 29.99m²) - 대지면적 1,611.77m², 연면적 4,258.42m² - 주민공동시설 1개실 (전용면적 51.78m²) 	

공급대상	면적(m ²)			임대조건(원)		모집호수
	계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94호	39.46	22.84	16.62	4,137,000 ~ 4,237,000	271,830 ~ 275,070	2
	39.31	22.9	16.41	4,237,000	273,120 ~ 276,750	12
	41.36	23.92	17.44	4,438,000	288,530	1
	41.43	24.36	17.07	4,938,000 ~ 5,038,000	322,930 ~ 326,170	36
	45.48	26.57	18.91	4,643,000 ~ 4,843,000	305,600 ~ 317,520	5
	46.83	27.37	19.46	4,844,000	314,990	12
	49.19	28.57	20.62	5,246,000	342,560	3
	49.67	29.28	20.39	5,746,000 ~ 5,846,000	370,030 ~ 378,730	15
	51.27	29.89	21.38	5,249,000 ~ 5,449,000	344,240 ~ 356,180	5
	51.67	29.99	21.68	5,549,000	359,73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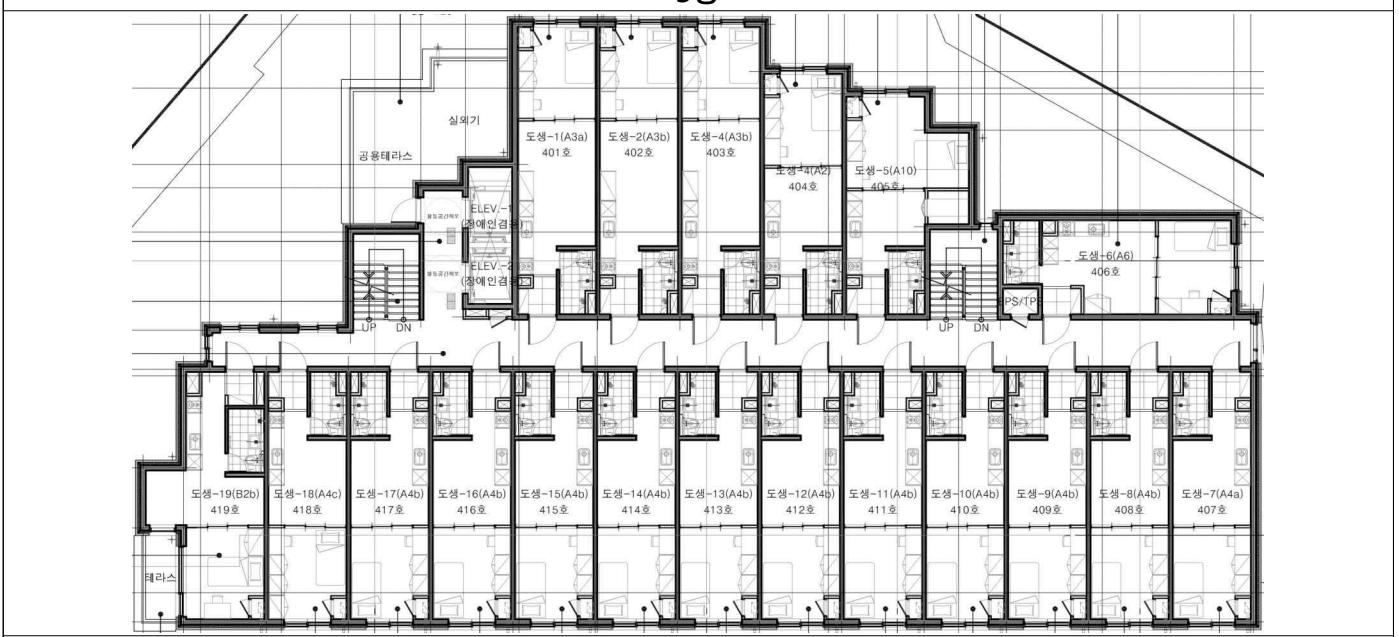
- 호실 신청은 계약 전 주택 실물 확인 후 희망 주택 탑입을 신청하나, 신청 탑입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 임의 배정합니다. (배정 호수가 희망하는 탑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별 평면도





3층



4층



5층

■ 주택 내부 사진



■ 주택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 기본 시설 : 책상, 의자, 불박이장(옷장 및 수납장), 냉장고, 세탁기, 2구 전기 쿡탑, 시스템에어컨, 실내환기시스템, 디지털도어락
- 부대시설 : 주민공동시설, 무인택배함, 자전거거치대

■ (기본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 청년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120%	4,317,797원

* 1인가구는 20%p 가산 적용한 금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기준 100% 금액(3,598,164원)에 가산)

○ (자산기준)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구분	기준 금액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 행복주택(청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신청자의 부모 및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필수)상기 자격을 충족하면서, 예술인으로 아래 증명이 가능한 자

예술인 기준	증빙 자료	발급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유효)한 예술인 (신진예술인 포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예술인	예술활동 증빙자료* 포트폴리오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자료별 상이 본인 작성 (자유양식) ※ 온라인 포트폴리오 가능
• 예술 분야 대학 재학생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자 포함)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복학신청서류)	해당 대학
• 예술 분야 대학 졸업자 ※ 예술활동 계획이 있는 자에 한함	졸업증명서	해당 대학
• 예술 분야 교육생 및 교육 이수자** ※ 예술활동 계획이 있는 자에 한함	교육 관련 증빙자료	해당 교육기관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빙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혹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의 분야별 제출 자료 기준

** 예술 분야 교육생 및 교육 이수자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며, 부적격 판정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예술 분야 대학 졸업자 및 교육 이수자의 경우 입주 후 예술활동이 없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참고)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 = 균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균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공급일정

절차	일정	내용	비고
모집공고	2025.11.19.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홈페이지 (www.yesnanum.org)	홈페이지
신청접수	2025.11.19. ~12.9.	하기 신청방법 참고	현장 또는 우편접수
주택개방	2025.12.4. ~12.6.	별도 신청 페이지에서 하루 이상 전에 시간대별 사전 신청 후 현장 방문 (시간당 참여 인원 제한있음)	
입주자격 조회 신청	2025.12.10.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금융 등 자산 조회	별도 통지 없음
입주자 선정위원회	입주자격 조회 기간 중	예술인 기준 확인 및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	별도 통지 없음
입주 대상자 및 예비 입주자 발표	개별 안내	입주 호수 4배수까지 입주 대상자 및 예비 입주자 발표	홈페이지 /개별안내
입주민 사전 워크숍	개별 안내	주택 및 운영 프로그램 설명, 희망 호수 신청	주택 현장 진행
호 배정 결과 발표	개별 안내	희망 호수 및 공간 특성에 따른 배정, 희망 공간 중복 시 추첨	개별안내
계약체결	개별 안내	주택 내부 확인 및 계약	개별방문
추가 입주 대상자 발표	개별 안내	미계약 호수에 대한 추가 발표	개별안내
계약체결	개별 안내	주택 내부 확인 및 계약	개별방문

■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	비고
우편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22길 22, 5층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	등기우편 필수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주택 현장 방문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8길 40-6	주택 개방 일정에 맞춰 사전 신청 후 현장 방문 제출

- 모집공고일(25.11.19.)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활동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커뮤니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입주 후 창작 및 활동 계획 • 첨부 양식에 2쪽 이내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입주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필수) https://forms.gle/LUTiE6EPmYgFoZ3p8 	
포트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 파일 또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가능 • 온라인 포트폴리오 제출의 경우 온라인 입주신청서에 링크 기재 • 포트폴리오를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이메일로 제출하며 (uneporte@yesnanum.org), 제출자 확인을 위해 다른 제출서류 스캔파일과 함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이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서류 원본 제출 필수) 	자유 양식

■ 가점 적용 대상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아동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 각 세대에 베리어프리 설계는 적용되지 않았음	행정복지센터

※ 예술인 조건을 갖추지 않은 가점 적용 대상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입주 후에라도 퇴거조치 하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입주신청서와 활동계획서, 포트폴리오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격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구분	유의사항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 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술인 기준을 포함한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211호, 2023.5.10,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주택별, 계층별 해당 호실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 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년 주택 위치는 공고문 내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잔금은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공통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p>■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부대시설의 이용은 공동주택 운영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 입주·관리 등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택은 청년 예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으로 계약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취지에 맞추어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 규약 등 위반 시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카카오톡,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호실 및 공용공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하며,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 할 수 없습니다. • 주택내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

구분	유의사항
	<p>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보관소는 1층에 설치되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에 본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도로 및 철도 소음, 지장물 등 각종 환경저해 요인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호수보다 주차면 수가 적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이 적어 주차면이 남을 경우 주차장을 외부개방 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는 입주 후 운영기관과 입주민 대표조직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문의사항	운영기관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22길 22, 5층 운영기관 연락처 : 070-4149-6540
------	--

2025. 11. 19.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m²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 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청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기타 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 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한부모가족, 일반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서명	정보 제공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공적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을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 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증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4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루(Grew)하우스 서대문 활동계획서

예술인 지원주택 그루(Grew)하우스 서대문은 예술인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예술인들이 주택과 커뮤니티공간에서 활동하며 다채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그루(Grew)하우스 서대문에서 거주하며 자신만의 창작·창업을 이어감과 동시에 지역 내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해갈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 및 창작, 기획 등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중 이신 분들의 입주를 우대하며 추후 공간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름	(중복가능)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활동예술인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연락처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여
활동경력	활동분야	

자기소개

커뮤니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입주 후 창작 및 활동 계획

입주 후 창작 및 활동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규모, 횟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

※ 활동계획서는 자유롭게 작성하되 최대 2매 이내 제한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 2매 초과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본 설명란 삭제 가능)